

『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고,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7조)
- 교통안전교육 등(안 제9조)
- 교통지도 등(안 제10조)
-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(안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교통안전법」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」은

- 관련법에서 위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·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교육,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
- 향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등 재정지원 준비사항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